1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법률 제6,202호 2000. 1. 2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발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전국의 평균지가변동율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개발사업을 시행한 당해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개발부담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종전에는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 한하여 그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더라도 조합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일 :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2000. 4. 2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상지가상승분"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당해 개발사업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분담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이 해산된 경우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개발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제9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부터 이를 적용한다.